

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

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: 2023년 1월 ~ 12월(12개월)
- 근무시간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
- 보 수: 월 538,72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*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- 모집인원
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36명
- 모집분야
- 복지일자리(참여형)

| 연번 | 모집분야(직무) | 모집 인원(명) | 연번 | 모집분야(직무) | 모집 인원(명)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동물먹이포장 및 환경정화 | 2 | 5 | 간식보조 및 환경정화 | 1 |
| 2 | 세차보조 | 3 | 6 | 바리스타 | 7 |
| 3 | 영유아 돌봄 | 7 | 7 | 환경정화 | 15 |
| 4 | 기부물품관리 | 1 | ※ 2023년 배치기관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음. | | |

- 모집기간: 2022. 12. 06(화)~2022. 12. 19(월) / 10일간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- 신청자격
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-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-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※ 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(ex. '23년 신청자의 경우, '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-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
-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-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※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※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
-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-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-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※ 단,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

[의제 01254-15864호(1987.6.26.)]

4. 제출서류

<<필수서류>>

- ① 참여신청서[서식7]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-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8]: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
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(장애인일자리사업)(필수)[서식9]
 ※ '참여신청서' 및 '개인정보동의서'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
 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(ex. 도장 등)

※ 신청자의 '장애인등록여부' 및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'은 시군구에서 조회

<<추가서류>> *해당자에 한함

| 구분 | 증빙서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|--|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①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| - 재학증명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②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| -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※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3년 3월 이전(자격증 수령 즉시)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③ 자격증 소지자 | 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※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④ 졸업예정자 | 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※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⑤ 여성가장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첨부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통사항</td> <td colspan="2">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선택사항</td> <td>부모 부양시</td> <td>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</td> </tr> <tr> <td>가출·행방불명</td> <td>실종신고서</td> </tr> <tr> <td>장애</td> <td>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</td> </tr> <tr> <td>질병으로 요양 중</td> <td>의사의 진단서</td> </tr> <tr> <td>군복무</td> <td>복무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학교 재학</td> <td>재학증명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첨부서류 | | 공통사항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| | 선택사항 | 부모 부양시 |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 | 가출·행방불명 | 실종신고서 | 장애 |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| 질병으로 요양 중 | 의사의 진단서 | 군복무 | 복무확인서 | 학교 재학 | 재학증명서 |
| | 구분 | 첨부서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공통사항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선택사항 | 부모 부양시 |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가출·행방불명 | 실종신고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장애 |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질병으로 요양 중 | 의사의 진단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군복무 | | 복무확인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학교 재학 | 재학증명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교도소 입소</td> <td>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</td> </tr> <tr> <td>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</td> <td>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이혼소송 제기</td> <td>이혼소송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기타 가족 생계 부양</td> <td>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</td> </tr> </table> | 교도소 입소 | 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 |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|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| 이혼소송 제기 | 이혼소송확인서 | 기타 가족 생계 부양 | 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 |
| 교도소 입소 | 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 | | | | | | | | |
|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|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| | | | | | | | |
| 이혼소송 제기 | 이혼소송확인서 | | | | | | | | |
| 기타 가족 생계 부양 | 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 | | | | | | | | |
| ⑥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| -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| | | | | | | | |
| ⑦ 취업지원대상자 | 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 | | | | | | | |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(참고)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을 말함

- ① 미혼여성이거나,
-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
- 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
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※ 관련근거 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○ **접수방법: 직접접수(방문접수) ※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**

○ **접수처: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**

(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98번길 175 용계동) T. 042-540-3550, 3552

5. 기타 참고사항

-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- 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연가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
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
- 24세 이하(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-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-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-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-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- 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 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“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 명령”이라 한다)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)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장애인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이하 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”이라 한다)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
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- *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○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**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**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- 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’ 서식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홈페이지(www.djrc.or.kr)-[게시판](#) -[이용자모집](#)- **147번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(참여형) 참여자 모집**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 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 -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(TEL. 540-3550, 355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06일

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